|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1차 개정, 2009년 8월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2차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부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3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제품품질 감독**  **제3장 생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4장 손해배상**  **제5장 벌 칙**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제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고시키고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제품 생산과 판매활동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의 제품이라 함은 가공, 제작을 거쳐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건설공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자재, 건축구조물, 부품 및 설비가 전 항에서 규정한 제품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생산자, 판매자는 그 내부의 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포지션의 품질규범, 품질책임 및 상응하는 검정방법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생산자, 판매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며 제품의 산지, 타인의 회사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며 생산, 판매 제품에 잡물이나 가짜를 섞지 못하며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 방법을 보급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표준,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도달하거나 초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품 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제품품질을 국제선진수준에 도달시켰거나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제품품질의 제고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에 넣고 제품 품질 관련 업무의 통합 규획과 조직지도를 보강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품 품질을 제고시키도록 인도, 독촉해야 하며, 각 유관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제품생산, 판매에서 이 법 규정위반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제품품질감독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유관부서는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제품품질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법률에서 제품품질 감독부서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 업무직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서는 아니되며 본 지역, 본 계통에서 발생한, 제품 생산, 판매중의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싸주거나 방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품 생산, 판매중의 이 법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간여해서는 아니된다.  각급 지방인민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이 제품생산, 판매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싸주거나 방임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주요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 적발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기타 부서는 적발자에 대해 비밀에 붙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해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본 지역, 본 계통 이외의 기업이 생산한 품질 합격제품이 본 지역, 본 계통에 진입하는 것을 배척하지 못한다.  **제2장 제품품질 감독**  **제12조** 제품품질은 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13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해로운 공업제품은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에 대한 표준이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공업제품은 생산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4조** 국가는 국제통용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품질체계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율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인가하거나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수권부서가 인가한 인증기구에 기업 품질체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거쳐 합격되었을 경우 인증기구는 기업 품질체계인증증서를 발급한다.  국가는 국제 선진적인 제품표준과 기술요구를 참조하여 제품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자율적 원칙에 따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인가하거나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수권부서가 인가한 인증기구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거쳐 합격되었을 경우 인증기구는 제품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제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제품품질에 대해 표본추출을 주요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 국가규획과 대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업제품,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품질문제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 샘플은 시장에서 또는 기업 완제품 창고내의 재고품에서 무작위 추출해야 한다. 표본검사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기획하고 책임지며, 현급 이상 지방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표본검사를 감당할 수 있다. 법률이 제품품질 표본검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지방에서 별도의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며 상급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은 하급에서 별도의 중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품검사는 품질감독 검사의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할 때 추출하는 샘플의 량은 검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며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표본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가 표본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표본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결론은 재검사를 수리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내린다.  **제16조** 생산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인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성급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를 공시하며 공시 후의 재검사에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고 기한부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정돈기간이 만료된 후 재검사를 거쳐 제품품질이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표본검사 제품에 심각한 품질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취득한 불법혐의 증거나 적발에 근거하여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혐의 당사자의 생산, 판매활동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2) 당사자의 법정대표자와 주요책임자, 기타 직원을 통해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생산, 판매활동 관련 상황을 조사, 파악  (3) 당사자의 관련 계약, 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  (4)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 품질문제가 심각한 기타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생산, 판매에 직접 사용한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수단을 차압하거나 압류.  **제19조** 제품품질검사기구는 상응하는 검사여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수권부서의 검정을 거쳐 합격된 후에야 제품품질검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품질검사기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0조** 제품품질 검사, 인증에 종사하는 사회중개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한 기구여야 하며 행정기관이나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익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1조** 제품품질 검사기구, 인증기구는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또는 인증증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 발급해야 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후의 추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 인증마크 사용자격을 취소한다.  **제22조** 소비자는 제품 생산, 판매자에게 제품품질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서 및 유관부서에 신고할 권한이 있다. 신고 접수부서는 이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은 소비자가 반영한 제품품질문제를 입수한 후 관련부서에 처리하도록 건의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품질로 인해 받은 손해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24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품질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2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나 기타 국가기관, 또는 제품품질검사기구는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지 못하며 제품의 제조, 판매를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품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생산자,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26조** 생산자는 자체 생산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품질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인신,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 없으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을 경우 당해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제품이 구비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해야 한다. 단 제품의 사용성능에 하자가 존재함을 설명한 경우는 해당책임이 면제된다.  (3) 제품이나 그 포장에 명기한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설명, 실물샘플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7조** 제품 또는 그 포장의 표지는 반드시 진실하고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중문명칭, 생산회사 명칭 및 회사주소가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특징과 사용요구에 따라 필요한 제품사이즈, 등급,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뚜렷한 위치에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실효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5) 사용 부당으로 제품자체의 훼손을 초래하기 쉽거나 인신, 재산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표지 또는 중문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무포장 식품 또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운 기타 무포장 제품에는 제품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파손, 연소, 폭발이 용이하거나 유독, 부식성, 방사성 등의 위험물, 또는 보관, 운수중 도치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제품의 포장은 상응하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표지나 중문 경고설명을 가하고 보관, 운송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29조** 생산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제30조** 생산자는 산지를 위조하지 못하며 타인의 회사명칭, 회사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1조** 생산자는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2조**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잡물이나 가짜를 섞지 못하며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33조** 판매자는 입하 검사 및 검수제도를 수립, 실시해야 하며 제품의 합격증명과 기타 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4조** 판매자는 조치를 취해 판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판매자는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과 실효, 변질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36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지는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7조** 판매자는 산지를 위조하지 못하며 타인의 회사명칭, 회사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8조** 판매자는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39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는 잡물이나 가짜를 섞지 못하며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사칭하지 못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지 못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40조** 판매한 제품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수리, 교체, 반품 책임을 져야 하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1) 제품이 구비해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명시된 제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품설명, 실물샘플 등의 방식으로 제시된 품질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손실 배상책임을 진 후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이하 납품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납품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품 또는 손실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생산자 지간, 판매자 지간, 생산자와 판매자 지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수주계약에 부동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 손해를 입었거나 하자제품 이외 기타 재산(이하 타인의 재산이라 약칭함)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제품이 유통할 때 손해를 빚어낸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품이 유통할 때 그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판매자의 차실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생겨 인신손해나 타인의 재산 손실을 빚어낸 경우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자가 하자제품의 생산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하자제품의 납품자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3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인신손해, 타인의 재산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피해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품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품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나 판매자가 배상을 한 경우 제품 판매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품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나 제품 생산자가 배상을 한 경우 제품 생산자는 그 판매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44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인신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근무 중단으로 줄어든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의 생활자조 용구비, 생활보조비, 신체장애 배상금 및 그 부양자의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및 그 생전 부양자의 생활비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빚어낸 경우 침해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환가하여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그로 인해 기타 중대손실을 입었을 경우 침해자는 그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제45조** 제품의 하자로 초래된 손해배상의 소송시효는 2년이며 당사자가 그 권익이 침해받은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때부터 기산된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빚어낸 하자제품을 소비자에게 최초 교부해서부터 만 10년이 지나면 상실된다. 다만, 표시된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이 법에서의 하자라 함은 제품에 인신 또는 타인의 재산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함을 가리키며 제품에 적용되는,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7조** 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해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거절하거나 협상, 조정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각 방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각 방이 중재에 회부하는 데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중재합의가 무효한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은 이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품품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49조** 인체건강과 인신, 재산안전 보장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그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 제품(매출 또는 미매출 제품 포함, 이하 동일)의 화물가치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제품에 잡물이나 가짜를 섞거나 제품을 모조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 불합격 제품을 합격제품으로 사칭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키고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제품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2조** 실효, 변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판매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판매 제품가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3조** 제품의 산지를 위조한 경우, 타인의 회사명칭이나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인증마크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생산, 판매제품 화물가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4조** 제품표지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포장제품상의 표지가 이 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제품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제55조** 판매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3조에서 규정한 판매금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가 당해 제품이 판매금지 제품인 것을 몰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화물 공급원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 법적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업을 중지시키고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57조** 제품품질검사기구, 인증기구가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을 작성, 발급한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단위에는 5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그 검사자격, 인증자격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품품질검사기구, 인증기구가 작성, 발급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부실하여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검사자격,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가 이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한 데 대해 시정하도록 명령하지 아니하거나 그 인증마크 사용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제품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 사회단체나 사회중개기구가 제품의 품질을 약속 또는 보증했으나 해당 제품이 그가 약속, 보증한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9조** 광고에서 제품품질에 대한 허위홍보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도록 유도하였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생산자가 이 법 제49조, 제51조에 나열한 제품이나 모조제품의 생산에 전문 사용한 원부자재, 포장재, 생산수단은 몰수해야 한다.  **제61조** 이 법에서 규정한 생산, 판매 금지 제품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운송, 보관 등의 편리조건을 제공한 경우, 또는 모조 제품의 생산에 기술을 제공한 경우 운송, 보관, 저장 또는 모조 생산기술을 제공한 전부 수입을 몰수하며, 아울러 불법 수입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판매금지 제품을 영업성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사용한 제품이 이 법의 판매금지 제품에 속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불법 사용한 제품(기사용 또는 미사용 제품 포함)의 가치에 근거하여 이 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제63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차압, 압류한 물품을 은익, 전이, 매각, 훼손한 경우 은닉, 전이, 매각, 훼손한 물품의 가치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제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벌금, 과료를 납부해야 하나 그 재산으로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65조** 각급 인민정부의 업무직원과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이 법에서 규정한 제품의 생산, 판매중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한 경우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생산, 판매활동 종사자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조사 처리를 도피하도록 협조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조사 처리를 저애하거나 간여하여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제66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품품질감독 표본검사에서 규정한 량을 초과하여 샘플을 요구하거나 검사대상으로부터 검사비용을 수취한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감찰기관은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준다.  **제67조**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감제, 감독판매 등의 방식으로 제품의 경영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하고 해당 영향을 해소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준다.  제품품질검사기구가 전 항에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하고 해당 영향을 해소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하고 아울러 불법 소득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8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위해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준다.  **제69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시장감독관리부서 업무직원의 의법 직무수행을 저애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거부 또는 저애했으나 폭력, 위협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기타 방식을 취하여 처리한다.  **제72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4조,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한 화물가치는 불법 생산, 판매제품의 정찰가격으로 계산하며 정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6장 부 칙**  **제73조** 군수산업 제품의 품질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핵시설, 핵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의 배상책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4조**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1993年2月2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过；根据2000年7月8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8年12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五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产品质量的监督**  **第三章　生产者、销售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一节　生产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二节　销售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四章　损害赔偿**  **第五章　罚　则**  **第六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产品质量的监督管理，提高产品质量水平，明确产品质量责任，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产品生产、销售活动，必须遵守本法。  本法所称产品是指经过加工、制作，用于销售的产品。  建设工程不适用本法规定；但是，建设工程使用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属于前款规定的产品范围的，适用本法规定。  **第三条**　生产者、销售者应当建立健全内部产品质量管理制度，严格实施岗位质量规范、质量责任以及相应的考核办法。  **第四条**　生产者、销售者依照本法规定承担产品质量责任。  **第五条**　禁止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禁止伪造产品的产地，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禁止在生产、销售的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  **第六条**　国家鼓励推行科学的质量管理方法，采用先进的科学技术，鼓励企业产品质量达到并且超过行业标准、国家标准和国际标准。  对产品质量管理先进和产品质量达到国际先进水平、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把提高产品质量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加强对产品质量工作的统筹规划和组织领导，引导、督促生产者、销售者加强产品质量管理，提高产品质量，组织各有关部门依法采取措施，制止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保障本法的施行。  **第八条**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全国产品质量监督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产品质量监督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产品质量监督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产品质量监督工作。  法律对产品质量的监督部门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第九条**　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和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徇私舞弊，包庇、放纵本地区、本系统发生的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或者阻挠、干预依法对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  各级地方人民政府和其他国家机关有包庇、放纵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的，依法追究其主要负责人的法律责任。  **第十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向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检举。  市场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并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给予奖励。  **第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排斥非本地区或者非本系统企业生产的质量合格产品进入本地区、本系统。  **第二章 产品质量的监督**  **第十二条**　产品质量应当检验合格，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第十三条**　可能危及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工业产品，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未制定国家标准、行业标准的，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要求。  禁止生产、销售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标准和要求的工业产品。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四条**　国家根据国际通用的质量管理标准，推行企业质量体系认证制度。企业根据自愿原则可以向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认可的或者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申请企业质量体系认证。经认证合格的，由认证机构颁发企业质量体系认证证书。  国家参照国际先进的产品标准和技术要求，推行产品质量认证制度。企业根据自愿原则可以向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认可的或者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申请产品质量认证。经认证合格的，由认证机构颁发产品质量认证证书，准许企业在产品或者其包装上使用产品质量认证标志。  **第十五条**　国家对产品质量实行以抽查为主要方式的监督检查制度，对可能危及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产品，影响国计民生的重要工业产品以及消费者、有关组织反映有质量问题的产品进行抽查。抽查的样品应当在市场上或者企业成品仓库内的待销产品中随机抽取。监督抽查工作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划和组织。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在本行政区域内也可以组织监督抽查。法律对产品质量的监督检查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国家监督抽查的产品，地方不得另行重复抽查；上级监督抽查的产品，下级不得另行重复抽查。  根据监督抽查的需要，可以对产品进行检验。检验抽取样品的数量不得超过检验的合理需要，并不得向被检查人收取检验费用。监督抽查所需检验费用按照国务院规定列支。  生产者、销售者对抽查检验的结果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验结果之日起十五日内向实施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申请复检，由受理复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作出复检结论。  **第十六条**　对依法进行的产品质量监督检查，生产者、销售者不得拒绝。  **第十七条**　依照本法规定进行监督抽查的产品质量不合格的，由实施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其生产者、销售者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予以公告；公告后经复查仍不合格的，责令停业，限期整顿；整顿期满后经复查产品质量仍不合格的，吊销营业执照。  监督抽查的产品有严重质量问题的，依照本法第五章的有关规定处罚。  **第十八条**　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对当事人涉嫌从事违反本法的生产、销售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二)向当事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与涉嫌从事违反本法的生产、销售活动有关的情况；  (三)查阅、复制当事人有关的合同、发票、帐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或者有其他严重质量问题的产品，以及直接用于生产、销售该项产品的原辅材料、包装物、生产工具，予以查封或者扣押。  **第十九条**　产品质量检验机构必须具备相应的检测条件和能力，经省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部门考核合格后，方可承担产品质量检验工作。法律、行政法规对产品质量检验机构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二十条**　从事产品质量检验、认证的社会中介机构必须依法设立，不得与行政机关和其他国家机关存在隶属关系或者其他利益关系。  **第二十一条**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必须依法按照有关标准，客观、公正地出具检验结果或者认证证明。  产品质量认证机构应当依照国家规定对准许使用认证标志的产品进行认证后的跟踪检查；对不符合认证标准而使用认证标志的，要求其改正；情节严重的，取消其使用认证标志的资格。  **第二十二条**　消费者有权就产品质量问题，向产品的生产者、销售者查询；向市场监督管理部门及有关部门申诉，接受申诉的部门应当负责处理。  **第二十三条**　保护消费者权益的社会组织可以就消费者反映的产品质量问题建议有关部门负责处理，支持消费者对因产品质量造成的损害向人民法院起诉。  **第二十四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定期发布其监督抽查的产品的质量状况公告。  **第二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国家机关以及产品质量检验机构不得向社会推荐生产者的产品；不得以对产品进行监制、监销等方式参与产品经营活动。  **第三章　生产者、销售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一节　生产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二十六条**　生产者应当对其生产的产品质量负责。  产品质量应当符合下列要求：  (一)不存在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有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应当符合该标准；  (二)具备产品应当具备的使用性能，但是，对产品存在使用性能的瑕疵作出说明的除外；  (三)符合在产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符合以产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  **第二十七条**　产品或者其包装上的标识必须真实，并符合下列要求：  (一)有产品质量检验合格证明；  (二)有中文标明的产品名称、生产厂厂名和厂址；  (三)根据产品的特点和使用要求，需要标明产品规格、等级、所含主要成份的名称和含量的，用中文相应予以标明；需要事先让消费者知晓的，应当在外包装上标明，或者预先向消费者提供有关资料；  (四)限期使用的产品，应当在显著位置清晰地标明生产日期和安全使用期或者失效日期；  (五)使用不当，容易造成产品本身损坏或者可能危及人身、财产安全的产品，应当有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  裸装的食品和其他根据产品的特点难以附加标识的裸装产品，可以不附加产品标识。  **第二十八条**　易碎、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等危险物品以及储运中不能倒置和其他有特殊要求的产品，其包装质量必须符合相应要求，依照国家有关规定作出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标明储运注意事项。  **第二十九条**　生产者不得生产国家明令淘汰的产品。  **第三十条**　生产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  **第三十一条**　生产者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第三十二条**　生产者生产产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第二节　销售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三十三条**　销售者应当建立并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验明产品合格证明和其他标识。  **第三十四条**　销售者应当采取措施，保持销售产品的质量。  **第三十五条**　销售者不得销售国家明令淘汰并停止销售的产品和失效、变质的产品。  **第三十六条**　销售者销售的产品的标识应当符合本法第二十七条的规定。  **第三十七条**　销售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  **第三十八条**　销售者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第三十九条**　销售者销售产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第四章　损害赔偿**  **第四十条**　售出的产品有下列情形之一的，销售者应当负责修理、更换、退货；给购买产品的消费者造成损失的，销售者应当赔偿损失：  (一)不具备产品应当具备的使用性能而事先未作说明的；  (二)不符合在产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的；  (三)不符合以产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的。  销售者依照前款规定负责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后，属于生产者的责任或者属于向销售者提供产品的其他销售者(以下简称供货者)的责任的，销售者有权向生产者、供货者追偿。  销售者未按照第一款规定给予修理、更换、退货或者赔偿损失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  生产者之间，销售者之间，生产者与销售者之间订立的买卖合同、承揽合同有不同约定的，合同当事人按照合同约定执行。  **第四十一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缺陷产品以外的其他财产(以下简称他人财产)损害的，生产者应当承担赔偿责任。  生产者能够证明有下列情形之一的，不承担赔偿责任：  (一)未将产品投入流通的；  (二)产品投入流通时，引起损害的缺陷尚不存在的；  (三)将产品投入流通时的科学技术水平尚不能发现缺陷的存在的。  **第四十二条**　由于销售者的过错使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他人财产损害的，销售者应当承担赔偿责任。  销售者不能指明缺陷产品的生产者也不能指明缺陷产品的供货者的，销售者应当承担赔偿责任。  **第四十三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他人财产损害的，受害人可以向产品的生产者要求赔偿，也可以向产品的销售者要求赔偿。属于产品的生产者的责任，产品的销售者赔偿的，产品的销售者有权向产品的生产者追偿。属于产品的销售者的责任，产品的生产者赔偿的，产品的生产者有权向产品的销售者追偿。  **第四十四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受害人人身伤害的，侵害人应当赔偿医疗费、治疗期间的护理费、因误工减少的收入等费用；造成残疾的，还应当支付残疾者生活自助具费、生活补助费、残疾赔偿金以及由其扶养的人所必需的生活费等费用；造成受害人死亡的，并应当支付丧葬费、死亡赔偿金以及由死者生前扶养的人所必需的生活费等费用。  因产品存在缺陷造成受害人财产损失的，侵害人应当恢复原状或者折价赔偿。受害人因此遭受其他重大损失的，侵害人应当赔偿损失。  **第四十五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要求赔偿的诉讼时效期间为二年，自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权益受到损害时起计算。  因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要求赔偿的请求权，在造成损害的缺陷产品交付最初消费者满十年丧失；但是，尚未超过明示的安全使用期的除外。  **第四十六条**　本法所称缺陷，是指产品存在危及人身、他人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产品有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是指不符合该标准。  **第四十七条**　因产品质量发生民事纠纷时，当事人可以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当事人不愿通过协商、调解解决或者协商、调解不成的，可以根据当事人各方的协议向仲裁机构申请仲裁；当事人各方没有达成仲裁协议或者仲裁协议无效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第四十八条**　仲裁机构或者人民法院可以委托本法第十九条规定的产品质量检验机构，对有关产品质量进行检验。  **第五章　罚　则**  **第四十九条**　生产、销售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包括已售出和未售出的产品，下同)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条**　在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或者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一条**　生产国家明令淘汰的产品的，销售国家明令淘汰并停止销售的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二条**　销售失效、变质的产品的，责令停止销售，没收违法销售的产品，并处违法销售产品货值金额二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三条**　伪造产品产地的，伪造或者冒用他人厂名、厂址的，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的，责令改正，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四条**　产品标识不符合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责令改正；有包装的产品标识不符合本法第二十七条第(四)项、第(五)项规定，情节严重的，责令停止生产、销售，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  **第五十五条**　销售者销售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三条规定禁止销售的产品，有充分证据证明其不知道该产品为禁止销售的产品并如实说明其进货来源的，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第五十六条**　拒绝接受依法进行的产品质量监督检查的，给予警告，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特别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七条**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伪造检验结果或者出具虚假证明的，责令改正，对单位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取消其检验资格、认证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出具的检验结果或者证明不实，造成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造成重大损失的，撤销其检验资格、认证资格。  产品质量认证机构违反本法第二十一条第二款的规定，对不符合认证标准而使用认证标志的产品，未依法要求其改正或者取消其使用认证标志资格的，对因产品不符合认证标准给消费者造成的损失，与产品的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情节严重的，撤销其认证资格。  **第五十八条**　社会团体、社会中介机构对产品质量作出承诺、保证，而该产品又不符合其承诺、保证的质量要求，给消费者造成损失的，与产品的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  **第五十九条**　在广告中对产品质量作虚假宣传，欺骗和误导消费者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追究法律责任。  **第六十条**　对生产者专门用于生产本法第四十九条、第五十一条所列的产品或者以假充真的产品的原辅材料、包装物、生产工具，应当予以没收。  **第六十一条**　知道或者应当知道属于本法规定禁止生产、销售的产品而为其提供运输、保管、仓储等便利条件的，或者为以假充真的产品提供制假生产技术的，没收全部运输、保管、仓储或者提供制假生产技术的收入，并处违法收入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二条**　服务业的经营者将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二条规定禁止销售的产品用于经营性服务的，责令停止使用；对知道或者应当知道所使用的产品属于本法规定禁止销售的产品的，按照违法使用的产品(包括已使用和尚未使用的产品)的货值金额，依照本法对销售者的处罚规定处罚。  **第六十三条**　隐匿、转移、变卖、损毁被市场监督管理部门查封、扣押的物品的，处被隐匿、转移、变卖、损毁物品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  **第六十四条**　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其财产不足以同时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第六十五条**　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和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包庇、放纵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行为的；  (二)向从事违反本法规定的生产、销售活动的当事人通风报信，帮助其逃避查处的；  (三)阻挠、干预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对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造成严重后果的。  **第六十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在产品质量监督抽查中超过规定的数量索取样品或者向被检查人收取检验费用的，由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监察机关责令退还；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七条**　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国家机关违反本法第二十五条的规定，向社会推荐生产者的产品或者以监制、监销等方式参与产品经营活动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产品质量检验机构有前款所列违法行为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可以并处违法收入一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质量检验资格。  **第六十八条**　市场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九条**　以暴力、威胁方法阻碍市场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依法追究刑事责任；拒绝、阻碍未使用暴力、威胁方法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  **第七十条**　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七条、第六十条至第六十三条规定的行政处罚由市场监督管理部门决定。法律、行政法规对行使行政处罚权的机关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七十一条**　对依照本法规定没收的产品，依照国家有关规定进行销毁或者采取其他方式处理。  **第七十二条**　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四条、第六十二条、第六十三条所规定的货值金额以违法生产、销售产品的标价计算；没有标价的，按照同类产品的市场价格计算。  **第六章　附　则**  **第七十三条**　军工产品质量监督管理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另行制定。  因核设施、核产品造成损害的赔偿责任，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七十四条**　本法自1993年9月1日起施行。 |